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9천 여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시 최대 산업 및 고용 중심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G밸리 기업투자펀드 111억원을 조성·운용 중(서울시 총 출자금액 5억원 중 3억원 既 출자)에 있으며,
- 나.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 G밸리 종합발전계획-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시장방침 '15.11.)
-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운용 계획(부시장 방침 '16.3.)

나. 출자 필요성

- 서울시 최대 IT중심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창업→ 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창업초기 중소기업 위주의 G밸리 內 기업특성장 사업규모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절실
- G밸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정부 요구사항 1순위는 자금 조달 문제

다. 펀드 개요

항 목	내 용
펀드명칭	G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조성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 용 사	(주)플래티넘기술투자(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
조성기간/투자기간	'16.8.4 ~ '25.8.3(9년)/'16.8.4 ~ '20.8.3(4년)
출자자 및 출자금액	총 111억원 - 서울시(5억,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 SBA(5억)/ 구로구(3억)/금천구(3억)/모태펀드(70억)/ 플래티넘 기술투자(15억)/ 산은캐피탈(10억)
투자대상	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등

라.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신제품·기술·연구개발,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제14조(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 기금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정책팀 이성태 (☎2133 - 4823)